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제정 2018. 5.29    전부개정 2018. 9.21  
 개정 2019. 1.10  
 개정 2019. 2.2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용요강 부칙)  
 개정 2019. 3.19(정관부칙)  
 개정 2019. 4. 5    개정 2019.12.27  
 개정 2020. 3.30    개정 2020. 9. 2  
 개정 2020.12.31  
 개정 2021.3.1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에 따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세부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19.2.22>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가입(이하 “전환가입” 이라 한다)”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하여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가입자(이하 “전환가입자” 라 한다)”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하여 가입한 자를 말한다.
3. “위탁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모·심사절차를 거쳐 공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진공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3.19>

**제3조(적용범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공제” 라 한다)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추진 체계 및 운영주체별 역할)** ① 중소기업부(이하 “중기부” 라 한다), 중진공 및 수행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② 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운영주체의 역할 및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5>

운영주체		역할 및 업무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사업 시행 전반 총괄 및 조정 업무</li> <li>· 공제사업 필요예산 편성 및 관리 업무</li> <li>· 공제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 업무</li> <li>· 규정 및 운영지침 등 검토·승인 업무</li> </ul>
중진공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운영지침 등 제·개정 업무</li> <li>· 공제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총괄 업무</li> <li>· 공제사업 안내 및 홍보 총괄 업무</li> <li>· 공제가입 심사, 승낙, 가입업무 업무</li> <li>·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적립 업무</li> <li>·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환급금 산정 및 지급·반환 업무</li> <li>· 만기 공제금 산정 및 지급 총괄업무</li> <li>· 성과보상기금 운영 업무</li> <li>· 공제계약대출 관련업무</li> <li>· 교육 및 복지사업 업무</li> <li>·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li> <li>· 공제가입 실적 통계 유지 및 성과분석 등 업무</li> </ul>
	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사업 안내 및 홍보 업무</li> <li>· 공제가입 수요발굴 및 가입유치 업무</li> <li>· 공제가입 심사, 승낙, 가입업무</li> <li>·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적립 업무</li> <li>·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환급금 산정 및 지급·반환업무</li> <li>· 만기 공제금 산정 및 지급업무</li> <li>· 수행기관 발굴, 평가, 선정 및 관리 업무</li> <li>· 공제가입 실적 통계유지 등</li> </ul>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사업 안내 및 홍보</li> <li>· 공제가입 수요발굴 및 가입유치</li> <li>·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이하 “청년근로자” 라 한다) 및 중소기업 공제가입 요건 검토</li> <li>· 정부지원금 지원요건 검토</li> <li>· 공제계약자 사후관리</li> </ul>

③ 수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진공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2장 공제계약

**제5조(청약의 신청)** ① 공제계약의 청약(이하 “청약” 이라 한다)을 하는 중소기업 및 청년근로자(이하 “청약자” 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제1호의2 서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약서’ (이하 “청약서” 라 한다)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2019.12.27>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li> <li>·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li> <li>·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li> <li>· 주주명부(법인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li> <li>·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li> <li>· 병적증명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li> <li>· 가족관계증명서</li> </ul>

- ② 청약서에는 청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을 하여야 한다.
- ③ 청약서는 중진공 성과보상사업단 또는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청약의 승낙)** ① 중진공은 청약서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참여자격을 재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0>

② 중진공은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거절사유를 명시하여(별지 제3호 서식) ‘공제계약 청약거절 통보서’를 청약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청약의 철회)** ①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청약 승낙을 철회한 경우 중진공은 청약자에게(별지 제4호 서식) ‘공제계약 청약승낙철회 통보서’를 발송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약 철회 시 청약자가 납입한 공제부금이 있을 경우 중진공은 해당 공제부금을 납입한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청약자가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때에는(별지 제5호 서식)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입금액 반환은 청약철회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의 성립)** 규정 제18조에 따라 공제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진공은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별지 제2호 서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가입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9.12.27>

**제9조(계약의 취소)** ① 계약자가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6호 서식)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계약이 취소된 경우, 취소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부금은 공제부금을 납입한 계약자에게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정부지원금은 정부 등에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소반환금은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자 변경)** ① 공제가입 중소기업이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별지 제7호 서식) ‘계약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에게 상호, 주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별지 제8호 서식) ‘제변경 신청서’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제출한 최종의 상호, 주소 또는 연락처로 중진공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중진공은 제1항의 공제계약 변경승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변경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별지 제2호 서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가입증서’를 재교부한다. <개정 2019.12.27>

**제11조(전환가입)** ① 규정 제31조에 해당하는 내일채움공제 계약자는 전환가입할 수 있으며, 전환가입일은 전환가입 후 최초 공제부금 납입일로 한다.

② 전환가입 대상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로 한다.

③ 전환가입을 위해서는 ‘내일채움공제’ 계약자가(별지 제1호의3 서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가입 신청서(이하 “전환가입 신청서”라 한다)’와 함께 제5조제1항의 서류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하여 이미 제출한 서류가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 기존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2조(재가입 및 연계가입)** ① 계약자가 규정 제35조에 따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 하기 위해서는 ‘공제 재가입 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1>

② 재가입은 제24조제1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3.11>

③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은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제17조의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한다. <신설 2021.3.11>

④ 재가입 신청 기간은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로 하며, 재가입 시 가입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1.3.11>

⑤ 사업기간 종료 등 공제사업 관련 정부정책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2021.3.11>

⑥ 계약자가 규정 제35조에 따라 내일채움공제에 연계가입하기 위해서는(별지 제19호의2 서식) ‘공제 연계가입 신청서’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일채움공제의 계약 약관을 따른다. <신설 2021.3.11>

⑦ 연계가입 기간은 36개월부터 120개월까지로 하며, 연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11>

### 제3장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제13조(공제부금 관리계좌)** 공제부금의 수납은 중진공 명의의 공제사업 전용 공제부금 관리계좌로 한다.

**제14조(공제부금의 납입)** ①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과 중소기업 기여금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각각 월 최소 12만원과 20만원씩(정액적립방식) 납입한다. 다만,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중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하다. <개정 2019.1.10, 2019.4.5, 2020.9.2>

적립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8만원	10만원	12만원	14만원	16만원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12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28만원

② 계약자는 월 공제부금액을 청약서에 표시한 공제부금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회 공제부금은 중진공이 공제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이후 납입기일 이전에 납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청약의 신청과 동시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③ 계약자가 공제부금 납입기일 또는 자동이체 출금 지정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별지 제9호 서식)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과오납입이 발생하는 경우 중진공은 해당 과오납금을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며,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제부금의 수납)** 공제부금의 수납은 계약자가 청약서에 명시한 자동이체출금신청 계좌로부터 중진공의 공제부금관리계좌로 자동이체 한다.

**제16조(공제부금의 선납)** ① 계약자가 공제부금을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중진공에(별지 제10호 서식)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선납할 수 있는 공제부금의 최소한도는 1개월분 이상의 공제부금 합계액으로 하고, 최대한도는 잔여 공제계약의 기간 이내의 월 공제부금 합계로 한다.

**제17조(정부지원금 적립)** ① 정부지원금의 적립주기와 적립주기별 적립금액은 다음과 같다.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적립주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만원

② 정부지원금은 중진공 명의의 공제사업 전용 공제부금관리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적립한다.

**제18조(납입중지)** ① 중진공은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청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5>

1. 병역의무 이행 : 해당기간
2. 재해 : 6개월
3. 개인질병 : 6개월
4. 육아휴직 : 해당기간
5. 일시적 경제이유 : 12개월

② 계약자가 공제부금의 납입중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별지 제12호 서식) ‘공제부금 납입중지 신청서’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한 경우, 규정 제34조에 의한 공제 가입기간은 공제부금 납입중지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공제부금 금액변경)** ① 계약자는 규정 제37조에 따라 공제부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1호 서식)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진공은 계약자의 공제부금액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별지 제2호 서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9.12.27>

**제20조(납입지체의 통지)** 계약자가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입지체 통보를 한다.

1. 공제부금을 1회부터 5회차까지 납입지체한 자 : 공제부금 미납내역 및 납부안내 통지
2. 공제부금을 연속 6회차 납입지체한 자 : 공제부금 미납내역 및 납입안내 통지문 발송

## 제4장 공제계약의 해지

**제21조(중도해지)** ① 계약자가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이하 “해지청구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함께 증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
  2.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수령계좌 통장 사본(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공제계약 해지 시 필요한 확인서류
- ② 규정 제25조제2항의 사유로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증진공은 해지대상 계약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 ‘공제계약 해지통보서’를 지체 없이 발송한다.
- ③ 계약자의 대리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위임장」(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것)
  2.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
  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22조(해지환급금의 계산)** ① 규정 제26조의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사유 발생 일까지 적립된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규정 제30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4.5>

② 해지환급금은 (별지 제16호 서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환급금 지급계산서’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9.12.27>

**제23조(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해지환급금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귀책사유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지급기한은 해지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가입기간 동안 적정하게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5>

③ 해지환급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수급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환급금 중 수급권자가 직접 납입한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지환급금은 제21조제1항의 해지청구서에 기재된 해지환급금 수령계좌로 지급한다.

⑤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인 청년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으로 한다. <개정 2019.4.5>

⑥ 정부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한다. <개정 2019.4.5>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등)				
청년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기타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지원금 반환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지급 및 반환은 중소기업 귀책사유인 경우 제4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그 기간 이자로 하며, 청년근로자 귀책사유인 경우 정부지원금 총액(1,080만원)에서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과 만기가입기간(60개월)을 고려한 금액과 그 기간 이자로 한다. 다만,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

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한다. <개정 2019.1.10, 2019.4.5, 2019.12.27, 2020.12.31> <개정 2021.3.11>

중소기업 귀책사유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정부지원금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공제부금 납부차수	1회차	2~6회차	7~12회차	13~18회차	19~24회차	25~30회차	31~36회차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재가입자)	재가입 후 정부지원금 실 적립액 x 재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재가입 후 그 기간 이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은 정부에 반환한다. <개정 2019.4.5>

④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제1항에서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을 산정할 때 제24조제2항의 표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회차에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다. 다만,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31>

1. 공제부금 미납 <신설 2020.12.31>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등 <신설 2020.12.31>

## 제5장 공제금의 지급

**제25조(공제금의 청구)** ① 규정 제27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가 공제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의 해당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7호 서식) ‘공제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에 규정 제34조의 공제 가입기간이상 재직을 확인하는 서류 <개정 2019.4.5>
2. 청년근로자 본인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개정 2019.4.5>
3. 공제금을 자동이체출금신청계좌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제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등 기타 청년근로자의 공제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9.4.5>

**제26조(공제금 지급액의 계산)** ① 규정 제28조제1항의 공제금 지급금액은 공제사유 발생일까지 계약자가 적립한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규정 제30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4.5>

② 공제금 지급액은 (별지 제18호 서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지급계산서’에 따라 공제부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액 원천징수하고, 공제계약 대출원금과 이자 등 채권을 상계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1.3.11>

③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제1항에서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을 산정할 때 제24조제2항의 표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회차에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다. 다만,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31>

1. 공제부금 미납 <신설 2020.12.31>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등 <신설 2020.12.31>

**제27조(공제금 지급)** ① 중진공은 제25조에 따른 공제금의 일시금 지급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수령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가입기간 동안 적정하게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중진공의 검토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7>

② 수급권자인 청년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을 수급권자로 한다. <개정 2019.4.5>

③ 공제금은 청년근로자가 지정한 청년근로자 명의의 공제금 수령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9.4.5>

④ 공제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자에게 공제금지급계산서를 발급한다.

**제27조의2(공제금의 분할지급)** ① 중진공은 수급권자인 청년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금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근로자는 (별지 제28호 서식)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할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은 3년간 매월 25일(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분할금은 공제금을 분할지급횟수로 원금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방식의 경우 공제금 분할지급청구 접수일부터 최종 분할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규정 제30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최종 분할금 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9.12.27]

**제27조의3(분할금의 중도일괄지급)** ① 중진공은 공제금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잔여 분할금을 중도일괄하여 지급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수급권자인 청년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수급권자인 청년근로자가 잔여 분할금의 중도일괄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청년근로자

3. 수급권자인 청년근로자가 계약자인 중소기업에서 퇴직하는 때에는 그 청년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분할금 중도일괄지급의 경우 공제금 분할지급청구 접수일부터 중도일괄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규정 제30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중도일괄지급일일에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9.12.27]

## 제6장 공제계약 대출

**제28조(대출한도 및 조건)** ① 공제계약대출의 한도는 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 총액의 90% 이내로 한다. <개정 2019.4.5>

② 공제계약 대출금의 최소금액은 5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한다.

③ 공제계약의 대출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공제가입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공제계약의 대출기간은 공제가입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9.4.5>

④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공제계약대출의 연장은 1년 단위로 이자를 상환한 후에 가능하다.

**제29조(대출 신청)** ① 청년근로자가 공제계약대출 또는 공제계약대출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 ‘공제계약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9.4.5>

② 제1항의 청년근로자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초 상환기일 1영업일전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 중진공은 연장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9.4.5>

**제30조(대출이율)** 공제계약 대출이율은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개정 2021.3.11>

**제31조(공제계약 대출금의 지급)** 대출금의 지급은 (별지 제20호 서식) ‘공제계약 대출 신청서’에 의한 공제계약 대출금 수령계좌로 입금한다.

**제32조(대출기간의 기산 및 이자계산방법 등)** ① 대출기간은 대출금이 지급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을 대출금의 상환기일로 한다. 대출연장 시에는 당초 대출상환기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제가입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공제가입 잔여기간을 대출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9.4.5>

② 이자는 대출금에 규정 제30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적용이율에 이자계산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한다.

③ 대출금 지급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의 이자계산 일수는 1일로 한다.

④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4.5>

**제33조(중도 상환)** ①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 및 그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주고 자동이체 방식으로 상환처리 한 후, (별지 제24호 서식) ‘공제계약 대출금 상환계산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9.4.5>

②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공제계약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전액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제34조(상환 관리)** 중진공은 공제계약대출 상환기일을 예고 통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23호 서식) ‘공제계약 대출금 상환기일 예고통지서’를 발송한다.

**제35조(대출금 연체안내)** 공제계약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청년근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 서식) ‘공제계약 대출금 연체안내문’을 발송한다. <개정 2019.4.5>

## 제7장 보칙

**제36조(변제충당 순서)** 공제계약대출의 상환금액이 그 대출채무의 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기타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그 변제에 충당한다. <개정 2021.3.11>

**제37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계약자에게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②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진공은 계약자에게 중진공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중진공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도달하면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때
2. 공제계약 대출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제38조(단수처리)** 공제금, 해약환급금 및 기타 산출금액이 1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 제39조(제(諸)서식)** ①공제 운영에 필요한 제(諸)서식의 제목과 목차는 이 지침에 두며, 제(諸)서식의 세부내용은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 ② 청약서, 가입증서 등 각종 신청서는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및 발급하며, 이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40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공제계약 약관은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중진공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약관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약관은 개정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
- ③ 중진공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 제41조(지자체 등 일자리사업과의 연계)** ① 공제는 사업추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등 타기관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부 칙

이 운영지침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전환가입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15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 칙<2019.1.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청약접수된 공제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운용요강)<2019.2.22.>

-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요령 및 지침의 개정) ①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9호사목·아목 및 제18조제14의2호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 ②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9호사목·아목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 ③ 제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1 중 “핵심인력”을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 ④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중 “핵심인력”을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 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자산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제1조,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 ⑥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리스크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및 제1조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 ⑦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회계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및 제1조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 ⑧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핵심인력”을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 ⑨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분쟁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제1조,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 ⑩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 및 약관 제2조제4호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 ⑪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 및 약관 제2조제5호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력”으로 한다.

⑫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핵심인력”을 각각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한다.

### 부 칙<정관><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정관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은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정관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은 이 정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요강·규정·요령 및 지침의 개정) 기타 제 요강·규정·요령 및 지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하며, “중소기업진흥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으로 하고,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SBC” )”을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KOSME” )”로 하며, “www.sbc.or.kr”을 “www.kosmes.or.kr”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중소기업·벤처기업”으로 하며,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으로 한다.

### 부 칙<2019.4.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3.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9.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3.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도해지한 재가입 대상자는 동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계약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포함)을 말한다.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하 “핵심인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이하 “청년근로자”라 한다)”는 핵심인력 중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4. “위탁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한 공모·심사절차를 거쳐 공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3.19>
5.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하고 제35조의3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6.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말합니다.
7.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공제”라 한다)”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합니다.
8. “공제계약”은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가 공제부금을 납입할 것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23조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개정 2019.3.19>

9. “청약자”는 공제가입을 위해 청약서를 제출한 중소기업 및 청년근로자를 말합니다. <신설 2019.4.5>
10. “계약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청년근로자를 말합니다. <개정 2019.3.19, 2019.4.5>
11. “공제부금”은 계약자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2.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3. “공제금”은 제25조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정 2019.3.19>
14. “연계가입”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가 공제사유가 발생한 후 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20.3.30>
15.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가입(이하 “전환가입”이라 한다)”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하여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가입자(이하 “전환가입자”라 한다)”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하여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17. “청약철회”는 공제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8. “계약취소”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9. “중도해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로 인해 장애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0. “취소반환금”은 공제계약 취소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정 2019.3.19>
21. “해지환급금”은 공제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정 2019.3.19>
22. “공제계약대출”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에게 행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개정 2019.3.19>
23. “영업일”은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신설 2019.4.5>

24. “재가입”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가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한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설 2021.3.11>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 2019.3.19.>, <개정 2021.3.11>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개정 2019.3.19.>, <개정 2021.3.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2019.4.5.>, <개정 2021.3.11>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⑤ 계약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2장 공제의 가입 및 공제계약

**제4조(공제 가입대상)** ①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합니다.

②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근로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합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로 합

니다. <개정 2019.1.10>

**제5조(공제 가입제한)** ①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개정 2019.12.27>
3.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개정 2019.3.19, 2019.12.27>

②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근로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12.27>

**제6조(가입기간)** 공제 가입기간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60개월로 합니다. 다만, 전환 가입자의 공제가입기간은 ‘내일채움공제’의 잔여 공제가입 기간까지로 합니다.

**제7조(재가입 및 연계가입)** 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3.11>

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일채움공제’에 연계가입 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3.11>

- ③ 계약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제 재가입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3.11>
- ④ 재가입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규칙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신설 2021.3.11>
- ⑤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은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제19조의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신설 2021.3.11>
- ⑥ 재가입 신청 기간은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로 하며, 재가입 시 가입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기존 중도해지 한 재가입 대상자는 2021년 12월까지 재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3.11>
- ⑦ 사업기간 종료 등 공제사업 관련 정부정책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3.11>
- ⑧ 제2항의 연계가입 기간은 3년에서 10년까지로 합니다. <신설 2021.3.11>
- ⑨ 연계가입할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의 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신설 2021.3.11>

**제8조(공제 전환가입)** 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환가입할 수 있으며, 전환가입일은 전환가입 후 최초 공제부금 납입일로 합니다.

② 전환가입 대상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로 합니다.

③ 공제전환가입을 위해서는 전환청약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하여 이미 제출한 서류가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 기존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제9조(청약의 신청)** ① 공제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그 기업의 소속 청년근로자와 공동으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한다)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2019.12.27>

③ 청약서에는 계약자가 자필서명, 인감날인 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제10조(청약의 승낙 및 거절)**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공제가입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청약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9.3.19, 2020.3.30>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계약의 청약이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의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자 모두에게 지체 없이 거절의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2019.12.27>

**제11조(청약의 철회)** ① 공제청약한 중소기업 혹은 청년근로자는 제1회 공제부금 납입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4.5>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회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와 공제계약의 청약이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의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부금을 납입한 청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서 접수 또는 온라인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공제부금을 납입한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9.3.19, 2019.4.5>

**제12조(계약의 성립)** ① 공제계약의 청약이 승낙된 때에는 청약자 모두가 제1회 공제부금을 납입한 일자에 공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 2019.4.5>

② 공제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가입증서(이하 “공제가입증서”라 한다)를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개정 2019.3.19, 2019.12.27>

**제13조(계약의 취소)** ①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청년근로자는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4.5>

② 제1항에 따라 공제계약이 취소된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취소반환금을 계약자 및 정부 등에게 각각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9.3.19>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른 취소반환금은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접수 또는 온라인 공제계약 취소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9.3.19, 2019.4.5>

**제1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계약 체결 시 계약자 모두

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2019.4.5>

- 제15조(계약자 변경)** ① 계약자 중 중소기업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회사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공제계약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2019.4.5>
- ② 계약자는 상호, 주소, 연락처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9.3.19>
- ③ 계약자가 통지한 최종의 상호, 주소 또는 연락처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9.3.19>

### 제3장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제16조(공제부금 납입)** ①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과 중소기업 기여금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각각 월 최소 12만원과 20만원씩(정액적립방식)납입합니다. 다만,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은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합니다. <개정 2019.1.10, 2019.4.5, 2020.9.2>

적립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8만원	10만원	12만원	14만원	16만원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12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28만원

- ② 계약자는 청약서에 표시된 공제부금 납입기일중 하나를 지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납입기일을 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회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의 청약에 승낙한 이후 납입기일 이전에 납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청약의 신청과 동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 ③ 월 공제부금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납입기일에 계약자가 청약서에 명시한 자동이체출금신청 계좌로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제부금관리계좌로 자동이체 합니다. 다만, 공제부금 납입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납입기일로 한다. <개정 2019.3.19>
- ④ 계약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신청에 의하여 공제부금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 제17조(공제부금 금액변경)** ①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청년근로자는 제16조제1항의 납입기준의 범위 내에서 공제부금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4.5>
- ② 공제부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가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의 공제부금액이 변경된 때에는 계약자에게 공제가입증서를 재발급합니다. <개정 2019.3.19>

- 제18조(공제부금 선납)** ① 계약자는 신청에 의하여 공제부금의 납입기일 이전에 공제부금을 납입(이하 “선납”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선납할 수 있는 공제부금의 최소한도는 1개월분 이상의 공제부금 합계액으로 하고, 최대한도는 잔여 공제계약의 기간 이내의 월 공제부금 합계로 합니다.

- 제19조(정부지원금 적립)** ①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최대 36개월간 적립합니다. 다만, 공제전환가입의 경우, 공제부금 납입기간 및 정부지원금 적립기간은 ‘내일채움공제’ 공제가입기간의 잔여기간까지로 합니다.
- ② 정부지원금은 최대 1,080만원으로 하며,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최대 7회에 걸쳐 분할하여 적립합니다.
- ③ 정부지원금의 적립주기별 적립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정부지원금은 적립주기에 따라 적립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계약자가 6회 연속 공제부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2.31>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적립주기 (계약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만원

- 제20조(공제부금 납입중지)**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청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2019.4.5>
1. 병역의무 이행 : 해당기간
  2. 재해 : 6개월

3. 개인질병 : 6개월 <개정 2021.3.11>

4. 육아휴직 : 해당기간

5. 일시적 경제사유 : 12개월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한 경우, 제6조의 공제 가입기간은 공제부금 납입중지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21조(공제부금 납입지체의 통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가 1개월분 이상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자에게 그 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제22조(공제부금의 반환)** ① 공제부금이 회차별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납입의무가 없는 금액이 납입된 때에는 공제부금을 납입한 계약자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반환 사유를 먼저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공제부금을 납입한 계약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③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납입된 공제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반환 사유, 납입일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반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9.3.19>

#### 제4장 공제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지급

**제23조(공제계약의 중도해지)** ①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청년근로자는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4.5>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 중 어느 하나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2019.4.5, 2019.12.27>

1.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또는 청년근로자가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 모두에게 납입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12.27>

2.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을 한 경우 <신설 2019.12.27>

3.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공제에 가입한 경우 <신설 2019.12.27>

③ 계약자중 어느 하나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9.4.5>

1. 공제 가입 중소기업이 폐업 또는 해산한 때

2. 공제 가입 청년근로자가 퇴직한 때

3. 공제 가입 청년근로자가 사망한 때

4. 공제 가입 청년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때 <신설 2019.4.5>

5.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된 때 <신설 2019.4.5>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계약자 모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신설 2019.4.5>

**제24조(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제40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계약자와 정부에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② 공제계약의 중도해지시 공제부금 납입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개정 2019.4.5>

구 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 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 업 분류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등)				
청년 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기타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지원금 반환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지급 및 반환은 중소기업 귀책사유인 경우 제5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그 기간 이자로 하며, 청년근로자 귀책사유인 경우 정부지원금 총액(1,080만원)에서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과 만기가입기간(60개월)을 고려한 금액과 그 기간 이자로 합니다. 다만,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됩니다. <개정 2019.1.10, 2019.4.5, 2019.12.27, 2020.12.31.> <개정 2021.3.11>

중소기업 귀책사유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정부지원금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공제부금 납부차수	1회차	2~6회차	7~12회차	13~18회차	19~24회차	25~30회차	31~36회차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재가입자)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재가입자)	중소기업 귀책사유	재가입 후 정부지원금 실 적립액 x 재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재가입 후 그 기간 이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⑤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제1항에서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을 산정할 때 제24조제3항의 표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회차에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차감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2020.12.31>

1. 공제부금 미납 <신설 2020.12.31>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등 <신설 2020.12.31>

## 제5장 공제금의 지급

**제25조(공제사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 가입 청년근로자가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제6조의 공제 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단,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중 공제부금 미납시에는 공제금은 중도해지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개정 2019.3.19>

**제26조(공제금의 지급)** ① 제25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제40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9.3.19>

② 공제금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지급계산서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개정 2019.12.27>

③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제1항에서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을 산정할 때 제24조제3항의 표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회차에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차감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2020.12.31>

1. 공제부금 미납 <신설 2020.12.31>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등 <신설 2020.12.31>

**제27조(공제금의 수급)** 공제금의 수급권자는 계약자인 공제가입 청년근로자로 합니다. 다만, 청년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공제금 등의 상계)**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자에 대한 공제계약대출 및 기타 채권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지급할 공제금 등과 상계합니다. <개정 2019.3.19>

② 제1항의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다음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

홍공단은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개정 2019.3.19>

1. 중소기업진흥진흥홍공단이 계약자 또는 상속인 등에게 지급할 공제금 등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개정 2019.3.19>
2.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제29조(공제금 등 청구서 구비서류)** 수급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중소벤처기업진흥홍공단 지정양식) <개정 2019.3.19>
2. 공제사유, 중도해지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4.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30조(공제금 등의 지급)** ① 공제금은 수급권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급하고, 해지환급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개정 2019.4.5>

② 중소기업진흥진흥홍공단은 제25조에 따른 공제금의 일시금 지급청구 또는 제23조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가입기간 동안 적정하게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9.3.19, 2019.4.5, 2019.12.27>

③ 중소기업진흥진흥홍공단은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 또는 계약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40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개정 2019.3.19, 2019.12.27>

④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진흥홍공단은 해당 과오납금을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며,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9.3.19>

⑤ 중도해지사유 발생일 이후 납입된 금액은 해지환급금 지급시 반환하며, 위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0조의2(공제금의 분할지급)** ① 중소기업진흥진흥홍공단은 수급권자인 청년근로자의 청

구에 의하여 공제금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근로자는 신청서(중소벤처기업진흥홍공단 지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분할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은 3년간 매월 25일(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분할금은 공제금을 분할지급횟수로 원금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방식의 경우 공제금 분할지급청구 접수일부터 최종 분할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8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최종 분할금 지급기일에 지급합니다.

[본조신설 2019.12.27]

**제30조의3(분할금의 중도일괄지급)** ① 중소기업진흥진흥홍공단은 공제금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잔여 분할금을 중도일괄하여 지급합니다. 단,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1. 수급권자인 청년근로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수급권자인 청년근로자가 잔여 분할금의 중도일괄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청년근로자
3. 수급권자인 청년근로자가 계약자인 중소기업에서 퇴직하는 때에는 그 청년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분할금 중도일괄지급의 경우 공제금 분할지급청구 접수일부터 중도일괄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8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중도일괄지급기일에 지급합니다.

[본조신설 2019.12.27]

## 제6장 공제계약 대출

**제31조(대출운용 원칙)** ① 공제계약 대출은 공제에 가입된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합니다.

② 공제계약 대출은 무담보·무보증으로 운용합니다.

**제32조(대출업무의 취급)** 공제계약 대출업무는 중소기업진흥진흥홍공단 성과보상사업단에서 취급합니다. <개정 2019.3.19>

**제33조(대출 운영방식)** 공제계약 대출은 온라인 대출방식으로 운영하고 이자는 대출금 상환시 후취합니다.

**제34조(대출 자격)**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공제계약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 납입월수가 누적 12개월 이상일 것. 다만, 전환자의 경우에는 전환가입 이전에 가입한 ‘내일채움공제’ 납입월수를 포함
2.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 미납액이 없을 것

**제35조(대출한도 및 조건)** ① 공제계약대출의 한도는 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의 공제납입금 총액의 90% 이내로 합니다.

- ② 공제계약 대출금의 최소금액은 5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합니다.
- ③ 공제계약의 대출기간은 공제가입 기간 이내에서 1년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가입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공제계약의 대출기간은 공제가입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개정 2019.4.5>
- ④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초 상환기일 1영업일전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연장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제36조(대출기간의 기산 및 이자계산방법 등)** ① 대출기간은 대출금이 지급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을 대출금의 상환기일로 합니다. 대출연장 시에는 당초 대출상환기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공제가입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공제가입 잔여기간을 대출기간으로 합니다. <개정 2019.4.5>

- ② 이자는 대출금에 제40조 및 제41조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적용이율에 이자계산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합니다.
- ③ 대출금 지급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의 이자계산 일수는 1일로 합니다.
- ④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9.4.5>

**제37조(중도 상환)** ①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가입 청년근로자가 공제계약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38조(변제충당 순서)** 공제계약대출의 상환금액이 그 대출채무의 전액에 미달하는 때

에는 기타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그 변제에 충당합니다. <개정 2021.3.11>

**제39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계약자에게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②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개정 2019.3.19>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때
2. 공제계약 대출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 제7장 제(諸)이율의 결정

**제40조(제(諸)이율의 종류 및 적용방법)** ① 제(諸)이율의 종류와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지급이율 :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 복리로 계산합니다.
  2. 중도해지 이율 :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중도해지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합니다.
  3. 해지후이율 : 공제사유 발생일 또는 중도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공제금, 해지환급금 지급일 또는 공제금 분할지급청구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개정 2019.12.27>
  4. 공제계약대출이율 : 공제계약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개정 2021.3.11> <삭제 2021.3.11>
  6. 분할금 이율 : 공제금 분할지급청구 접수일부터 최종 분할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합니다. <신설 2019.12.27>
  7. 분할금 중도일괄지급 이율 : 공제금 분할지급청구 접수일부터 분할금 중도일괄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신설 2019.12.27>
- ② 공제계약기간 또는 공제계약 대출기간 중에 제(諸)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41조(제(諸)이율의 결정 및 공시)**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중금리, 기금건전성,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제계약에 관한 지급이율 등 제(諸)이율을 정합니다. <개정 2019.3.19>

② 제(諸)이율은 매분기 초에 정하여 3개월간 적용합니다. 다만, 시장금리가 급격히 변동하여 제(諸)이율과의 금리차가 현격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기간 중에도 제(諸)이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諸)이율을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개정 2019.3.19>

### 제8장 공제분쟁의 조정

**제42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공제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개정 2019.3.19>

**제43조(분쟁조정 신청)** 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제44조(조정 효력)** 분쟁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합의한 경우 그 조정결정 및 합의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제45조(조정 중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신청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46조(관할법원)** 공제분쟁에 관한 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를 통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9장 정보공개

**제47조(정보공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공제자산의

운영현황을 알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자산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공제자산의 건전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전환가입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15일부터 적용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청약접수된 공제계약부터 적용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약이 진행되거나 청약접수된 공제계약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청약접수된 공제계약부터 적용합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약이 진행되거나 청약접수된 공제계약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약관에 따릅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약이 진행되거나 청약접수된 공제계약에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약이 진행되거나 청약접수된 공제계약에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약이 진행되거나 청약접수된 공제계약에도 적용합니다.

**- 제(諸)서식) 목차 -**

제1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약서
제1호의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약서(다수가입자)
제1호의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가입 신청서
제2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가입증서
제3호	공제계약 청약거절 통보서
제4호	공제계약 청약승낙철회 통보서
제5호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제6호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제7호	계약자 변경 승인신청서
제8호	제변경 신청서
제9호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제10호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
제11호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
제12호	공제부금 납입중지 신청서
제13호	공제부금 미납내역 및 납입안내
제14호	공제계약 해지 통보서
제15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제16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환급금 지급계산서
제17호	공제금 지급 청구서
제18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지급계산서
제19호의2	공제 연계가입 신청서
제20호	공제계약 대출 신청서
제21호	공제계약 대출결정 및 지급통보서
제22호	공제계약 대출약정서
제23호	공제계약 대출금 상환기일예고통지서
제24호	공제계약 대출금 상환계산서
제25호	공제계약 대출금 연체안내문
제26호	공제부금 납입확인서
제27호	중소기업 성과공유 협약서
제28호	공제금 분할지급 신청서

